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교 육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추진체계에 부합하는 조직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재정책실·책임교육정책실·교육복지늘봄지원국·학생건강정책국을 각각 고등평생정책실·학교정책실·학생지원국·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으로 확대 개편하며, 교육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교육연구사 1명, 6급 1명),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 인공지능 인재 양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대학 구조개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교육부에 고등교육기관의 의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의대교육지원관과 의대교육기반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디지털교육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① 교육부에 운영지원과·고등평생정책실·학교정책실·학생지원국·영유아정책국·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을 둔다.

제7조제3항제17호의4 및 제17호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재정책실)”을 “(고등평생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재정책실”을 “고등평생정책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 교원인사·학생정원·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6.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7.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8. 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9. 대학원 설치·운영 및 교육·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1.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 운영

13. 인문사회·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학술 지원사업의 수립·시행

14.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학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16.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17.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18. 대학의 연구비 관리 및 운영 지원

1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지원

20.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1.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22.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23.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24.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25.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6.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8. 대학의 특성화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29.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30.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3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3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33.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시행

34. 국립대학 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35.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36.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37.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8. 사립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39.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40.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41. 사립대학의 혁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

42.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43. 비리·분쟁 사학의 정상화 지원

44.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45.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6.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47. 교육시설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48. 국립대학 교육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49.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50.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51.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52.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3.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54. 방송통신대학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55.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56.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57.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8.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5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60. 전문대학·법인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61.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62.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63.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64.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 지원

65. 전문대학의 특성화 지원

66.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67.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8.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69. 국가 장학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

70.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71. 대학생 취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72.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73.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4.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75.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11조의 제목 “(책임교육정책실)”을 “(학교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책임교육정책실”을 “학교정책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의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3.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5.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6. 초·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7.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8.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9. 과학고등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0. 초·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1.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2.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13. 자유학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15. 학생평가 제도 및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6.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초·중등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고교학점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정·검정·인정 교과용 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 도서 개발

20. 교과용 도서 제도의 개선

21.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22. 교과용 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공급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4.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및 교육 자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5. 학교 내 역사교육 강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6.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27.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및 독도 교육 지원

28.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수립·시행

29.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3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31. 초·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32. 초·중등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33.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시행

34.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총괄

35. 교육방송공사와 연계한 초·중등학습 지원 및 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6.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37.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38.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9.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0.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1.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42.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3. 초·중등학교 기후변화환경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44.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시행

45. 초·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46.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47.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제도 개선

48.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시행과 제도 개선

4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50.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5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52. 초·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54. 교원의 자격·양성·연수·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55.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6.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운영

57. 교원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58.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법령 정비, 제도 운영

59.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60.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62. 교육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6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교육훈련·복무·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65.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66.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67.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68.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69.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70.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

71.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72.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

73.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74.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75. 초·중등학교 교육시설 기본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76. 초·중등학교 교육환경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을 “(학생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을 “학생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문화교육 지원 및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7.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8.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9.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10.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시행

11.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설치·폐지와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2.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시행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수립·시행

제12조의3의 제목 “(학생건강정책국)”을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생건강정책국”을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4.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5. 학교안전 업무의 총괄

6.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 관련 교사·학부모 교육자료의 개발

7.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8.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0. 학교 구성원 사회·정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2.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

13.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4.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 ①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부처 인재양성정책의 기획·총괄

2. 인재양성정책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인력수급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5.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의 기획·총괄

6.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총괄

7.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9.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정책의 수립·추진

10.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과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2.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과 학습지도 능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13. 고등·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 양성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시행

14. 대학 및 전문대학의 인공지능과 그 밖의 학문 분야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15.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협력

16. 교육 분야 디지털 기반 지원에 관한 기획·총괄

17.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과제의 발굴 및 기획

18.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

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 및 통계 활용

20. 부 내 정보화의 종합계획ㆍ예산 총괄 및 조정

2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시행

22.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23. 교육 분야 데이터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2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27. 국제교육통계의 분석 및 관리

28. 교육정보공시의 기획ㆍ총괄ㆍ운영 및 제도 개선

29. 사교육비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ㆍ분석

제37조제3항 전단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을 “1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인재정책실장”을 “고등평생정책실장”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3항제51호ㆍ제53호”를 “제10조제3항제44호ㆍ제46호”로, “인재정책실장”을 “고등평생정책실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인재정책실”을 “고등평생정책실”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671”을 “683”으로 하고, 특정직 계 “91”을 “94”로 하며,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89”를 “92”로 하고, 일반직 계 “574”를 “5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55”를 “564”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4 제4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513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2조제5항, 별표 1, 별표 3의2, 별표 4 및 대통령령 제3513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교육부에 운영지원과・인재정책실・책임교육정책실・교육복지늘봄지원국・영유아정책국 및 학생건강정책국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교육부에 운영지원과・고등평생정책실・학교정책실・학생지원국・영유아정책국・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디지털교육기획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② ---------- 기획조정실장 ----------.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 략)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③ ----------.
1. ~ 17의3. (생 략)	1. ~ 17의3. (현행과 같음)
17의4. 교육시설 업무의 총괄	<삭 제>
17의5.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지원 및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8. ~ 36. (생 략)	18. ~ 36. (현행과 같음)
제7조의3(디지털교육기획관) 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	<삭 제>

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교육부 소관 디지털 정책의 기획·총괄 2. 디지털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의 총괄 3. 디지털교육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6. 교육 분야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관한 기획·총괄 7.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과제의 발굴 및 기획 8.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보급 및 통계 활용 10. 부 내 정보화의 종합계획·예산 총괄 및 조정 11. 교육기관의 정보보호(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 12. 교육데이터정책의 기획·총괄 1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15. 국제교육통계의 분석 및 관리 16. 교육정보공시의 기획·총괄·운영 및 제도 개선 17. 사교육비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분석		
제10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양성정책의 기획·총괄 2. 인재양성정책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인력수급 고도화를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 교원인사·학생정원·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5.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6.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7. 대학 교원인사·학생정원·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8.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협력 9.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10. 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1. 대학원 설치·운영 및 교육·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3.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	영 4.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6.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7.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8. 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9. 대학원 설치·운영 및 교육·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1.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 운영 13. 인문사회·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시행 14.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운영 15. 인문사회·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시행 16.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학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18.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19.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20.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지원 2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3.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24.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15. 학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16.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17.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18. 대학의 연구비 관리 및 운영 지원 1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지원 20.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1.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22.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23.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24.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25.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의 수립 및 시행 관리 25.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26.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27.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8.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29.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30.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1.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2.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시행 33. 국립대학 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34. 대학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5.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26.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8. 대학의 특성화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29.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30.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3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3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33.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시행 34. 국립대학 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35.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36.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

36.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37.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38.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39.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0.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41.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42. 대학생 취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43.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44. 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5.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6. 사립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47.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37.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8. 사립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39.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40.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41. 사립대학의 혁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 42.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43. 비리·분쟁 사학의 정상화 지원 44.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45.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6.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47. 교육시설 기본정책의 수립

48.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49. 사립대학의 혁신을 위한 제도의 개선	48. 국립대학 교육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50. 비리·분쟁 사학의 정상화 지원	49.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51.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50.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52.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51.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53.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52.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4.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53.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55.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4. 방송통신대학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56.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55.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57.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56.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58.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7.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
59.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	

한 사항 60. 방송통신대학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61.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62.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63.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4.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5.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66.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67.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제도 개선 68.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도 운영에 관한 사항 58.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5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60. 전문대학·법인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61.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62.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63.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64.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 지원 65. 전문대학의 특성화 지원 66.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67.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8.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수립·시행과 제도 개선
6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70.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1. 전문대학·법인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72.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73.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74.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75.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 지원
76. 전문대학의 특성화 지원
77.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78.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9.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80. 국가 장학금의 조성·관리

69. 국가 장학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
70.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71. 대학생 취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72.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73.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4.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75.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운영 81.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82.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8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11조(책임교육정책실) ① 책임교육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평가 및 교육콘텐츠 혁신,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총괄 2.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의적 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 초·중등학교의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6.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제11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의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3.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5.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7.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8.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9. 초·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10.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과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초·중등학교에서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운영 지원 및 교육정보 격차 해소 지원 13.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4.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5. 초·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6. 초·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7.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8.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9. 과학고등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0. 초·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1.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2.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13. 자유학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15. 학생평가 제도 및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6.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초·중등학교의 인문학 교

16.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7.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18. 자유학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정·검정·인정 교과용 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 도서 개발
20. 교과용 도서 제도의 개선
21.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22. 교과용 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공급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4.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5.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26.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및 독도 교육 지원
27.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28.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고교학점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정·검정·인정 교과용 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 도서 개발
20. 교과용 도서 제도의 개선
21.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22. 교과용 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공급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4.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및 교육 자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5. 학교 내 역사교육 강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6.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27.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및 독도 교육 지원
28.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수립·시행
29.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지원 2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30. 초·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 평가에 관한 사항 31.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32.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및 진로전담교사 제도 운영 지원 33.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34. 초·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35.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36. 학생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7.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시행 38.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총괄 39. 대학별고사 사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0.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	3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31. 초·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 평가에 관한 사항 32. 초·중등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33.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시행 34.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총괄 35. 교육방송공사와 연계한 초·중등학습 지원 및 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6.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37.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38.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9.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0.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1.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의 수립 및 제도 개선

41.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4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3.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교육훈련·복무·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4.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45.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46.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47.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48.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42.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3. 초·중등학교 기후변화환경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44.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시행

45. 초·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46.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47.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제도 개선

48.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시행과 제도 개선

4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50.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5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관리

49.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0.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

51.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52.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

53.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54.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55.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56. 학교안전 업무의 총괄

57.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 관련 교사·학부모 교육자료의 개발

58.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

52. 초·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54. 교원의 자격·양성·연수·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55.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6.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운영

57. 교원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58.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법령 정비, 제도 운영

59.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60.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62. 교육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6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제 구축 등

59.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0. 안전관리·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6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62. 초·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64. 교원의 자격·양성·연수·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65.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66.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운영

67. 교원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68.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법령 정비, 제도 운영

69.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교육훈련·복무·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65.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66.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67.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68.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69.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70.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

70.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1.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72.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71.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72.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 73.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74.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75. 초·중등학교 교육시설 기본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76. 초·중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육복지늘봄지원국) ① 교육복지늘봄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다문화교육 지원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6의2.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	제12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5. (현행과 같음) 6. 다문화교육 지원 및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삭 제>

영	
7.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7.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8.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8.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9.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시행	9.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10.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설치·폐지와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0.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시행
<신 설>	11.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설치·폐지와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2.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의 수립·시행	12.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시행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늘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수립·시행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학생건강정책국) ① 학생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제12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① 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5.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안전 업무의 총괄
6.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 관련 교사·학부모 교육자료의 개발
7.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시행	7.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8. 초·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8.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9. 안전관리·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0.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0. 학교 구성원 사회·정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 구성원 사회·정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2.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2.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
13.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3.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4.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	14.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로젝트)의 구축·운영 15. 학교 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신 설>	수립·시행 <삭 제> 제13조(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 ①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부처 인재양성정책의 기획·총괄 2. 인재양성정책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인력수급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5.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의 기획·총괄 6.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총

	괄 7.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9.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정책의 수립·추진 10.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과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2.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과 학습지도 능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13. 고등·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 양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14. 대학 및 전문대학의 인공지능과 그 밖의 학문 분야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15.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

	성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협력 16. 교육 분야 디지털 기반 지원에 관한 기획·총괄 17.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과제의 발굴 및 기획 18.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 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보급 및 통계 활용 20. 부 내 정보화의 종합계획·예산 총괄 및 조정 2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시행 22.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 및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23. 교육 분야 데이터정책의 기획·총괄 및 조정 2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및 제

	도 개선 27. 국제교육통계의 분석 및 관리 28. 교육정보공시의 기획·총괄·운영 및 제도 개선 29. 사교육비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분석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명---------- 중소벤처기업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예산처 -. ----------.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①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지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① ---------- 고등평생정책실장 ---------- 2026년 12월 31일----------

원관을 둔다. ② (생 략) ③ 의대교육지원관은 제10조제3항제51호·제53호 및 제4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0조제3항제44호·제46호 ---------- 고등평생정책실장-----.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교육부 인재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② ~ ⑤ (생 략)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 고등평생정책실---------- 2027년 12월 31일----------.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한시정원) ① ~ ④ 삭 제 ⑤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⑥ (생 략)	제42조(한시정원)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513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513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월 1일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71	683	+12
·	·	·	
·	·	·	
특정직 계	91	94	+3
·	·	·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89	92	+3
일반직 계	574	583	+9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555	564	+9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